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11661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7.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3,724,162원 및 그중 7,872,756원에 대하여 2021. 3. 9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 주식회사는 2016. 3. 21. 피고에게 5,808,996원을 대출기간 36개월, 이자율 연 26.9%, 연체이자율 연 24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(이하 '제1 대여금채권'이라 한다).

나. D 주식회사는 2016. 12. 5. 피고에게 7,500,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, 이자율 연 24.9%, 연체이자율 연 27.9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(이하 '제2 대여금채권'이라 한다).

다. 피고는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. C 주식회사는 2019. 3. 25. 원고에게 제1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, 2019. 4. 12.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 D 주식회사는 2019. 5. 13. 원고에게 제2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, 2019. 6. 17.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라. 2021. 3. 8. 기준으로 제1 대여금채권의 미변제 금액은 원금 2,655,376원, 이자 및 연체이자 1,990,774원 합계 4,646,150원이고, 제2 대여금채권의 미변제 금액은 원금 5,217,380원, 이자 및 연체이자 3,860,632원 합계 9,078,012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제1, 2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13,724,162원(= 4,646,150원 + 9,078,012원) 및 그중 원금 7,872,756원(= 2,655,376원 + 5,217,380원)에 대하여 2021. 3. 9.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재은